서울동부지방법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9카합10051 회장지위확인 가처분 채 권 자 유준상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채 무 자

1. 대한체육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회관) 대표자 이사 이기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정재훈

2.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501호대표자 이사 정제묵

주 문

1.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 2.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체육회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849)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체육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대한체육회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채무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체육단체이고,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이하 '채무자 대한요트협회'라 한다)는 채무자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이다.
- 2) 채권자는 2018. 5. 17. 실시된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채무자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의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연임제한 규정'이라 한다).

- 2) 채권자는 제14대(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15대(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6. 8. 28.경 임기를 마쳤다.
- 3) 소외 정제묵이 2017. 3. 30.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했다가 2018. 3. 23.경 사임하였다. 이에 채무자 대한요트협회는 2018. 5. 17.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채권자는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4) 채무자 대한요트협회가 2018. 5. 18. 채무자 대한체육회에 채권자에 대한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 대한체육회는 2018. 6. 12. '채권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의 회장을 2회 연속 역임했고(2009년~2012년, 2013년~2016년) 연임 횟수 산정 시에는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되므로,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회장 임기(2017년~2020년) 중에는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였다.
- 5)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대한요트협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하고 채무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인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 위 1심 법원은 2018. 12. 14. 채권자가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의회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연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의트협회는 채권자가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채무자 대한체육회는 채권자를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위 판결에 대하여 채무자 대한체육회가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849), 채무자 대한요트협회는 항소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이 2018. 12. 2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에 대한 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에 대하여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위 2018가합107501 사건에서 "채무자 대한요트협회는 채 권자가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채무자 대한요트협회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2018. 12. 29.경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에 대하여 위 2018가합107501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이 부분 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대한요트협회와 사이에 확정된 위 1심 판결에 따라 회장의 지위에 있다).

3. 채무자 대한체육회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채권자

채권자는 다른 회원종목단체 회장 연임 후 임기를 마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는 연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서 채권자 승소판결을 선고했는데

채무자 대한체육회가 여전히 채권자의 회장 지위를 부정하여 협회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다.

2) 채무자 대한체육회

- 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회장 인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의사 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다.
- 나) 연임제한 규정은 해당 임기 4년의 전체기간 동안 연임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취임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연임제한 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준하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대한체육회는 이 사건 신청이 '회장 인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이므로, 그 자체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가처분을 통해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경우에까지 인준 의사표시가 별도로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실질적으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채무자 대한체육회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7501)에서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요트협회 회장 취임이 연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위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가 일응 타당해 보이며, 채무자 대한체육회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② 채권자는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회장으로 취임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에도 채무자 대한체육회가이에 대한 인준을 거부해 현재 회장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채권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관계로 잔여 임기가 짧아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임기가 도과해버릴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 점, ④ 규정상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

4.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3. 29.

재판장 판 사 윤 태 식



 판
 사
 김
 슬
 기

 판
 사
 김
 동
 욱





정본입니다.

2019.03.29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 배학재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